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13 선고 2019가합14761 판결 [주식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12083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13 선고 2019가합14761 판결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문준영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송수한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2,841,74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그룹(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9. 1.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피고 B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40,800주와 경영권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35억원(이하 ‘이 사건 양수도대금’이라 한다)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9. 3. 30. 위 양수도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고, 피고 B는 2019. 6.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는 2019. 6.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20. 1. 8.경 소외 회사의 인수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면서, ① 피고 B는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2020. 2. 25.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고, ②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B가 보유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 등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며, ③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를 1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합의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2020. 3. 26. 위 2020. 1. 8.자 합의를 일부 변경하기로 하면서, ① 피고 B의 이 사건 양수도대금 반환채무의 지급기일을 2020. 4. 30.로 연기하였고, ②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③ 그 밖에 새로 합의하지 않은 사항들은 2020. 1. 8.자 합의에 따르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를 통하여 소외 회사를 17억 1,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20. 3. 31. 주식회사 E가 피고 B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17억 1,000만원에 인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소외 회사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여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사. 피고 C은 2020. 2. 26. 10억원, 2020. 3. 27. 2억원, 2020. 4. 29. 4억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이를 법정총당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대금의 이자, 원본의 순서로 총당하고 남은 피고 B의 주채무 원금은 2,132,841,7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2,132,841,74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2020. 3. 26.자 합의를 통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범위가 16억원으로 감액되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6억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를 감액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 C는 2019. 3. 30. 피고 B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양수도대금 35억원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를 다시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20. 1. 8.경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1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가, 2020. 3. 26.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16억원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② 2020. 1. 8.자 합의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19. 3. 30. 계약해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는 10억원으로 한다. 단,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한 실사 후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수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제11조)라는 내용이 있고, 2020. 3. 26.자 합의서에는 ‘2020. 1. 8.자 합의를 작성하여 2020. 2. 25.까지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2020. 2. 26. 10억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아니하여 2020. 1. 8.자 합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전문),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19. 3. 30.자 계약해지 합의 및 2020. 1. 8.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연대보증 채무는 16억원으로 한다.’(제3조 제1항), ‘본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2020. 1. 8.자 합의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문언상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변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감액하기로 약정한 것은,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인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할 경우 원고의 양수도대금 지급채무와 피고 B의 이 사건 양수도대금 반환채무를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는 효과를 가져오고, 원고측과 피고 B는 2020. 3. 31.경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을 17억 1,000만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대금 35억원에서 위 17억 1,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16억원으로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를 감액하려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상,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는 감액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웅,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